

통일 경제

남북경협합의서 의미와 과제(Ⅰ) : 청산결제¹⁾

주요 내용

- 남북 양측은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회의(11. 8~11)에서 청산결제 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청산결제 도입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합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 남북 양측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 거래의 상품과 한도, 청산은행, 청산계정의 신용 한도 등을 정해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음
- 향후 남북교역에서는 청산결제방식과 일반 환결제 방식을 병행하며, 청산결제통화는 미 달러화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화폐(남북교역 전용 화폐)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이로써, 교역 건별로 매번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남북한간 교역 누적 차액만을 결제하는 청산결제 방식과 채권국이 채무국에게 채무액을 무이자로 자동 대월해주는 대월제도의 도입이 예상됨
- 남북교역 전용의 청산결제통화란 실제 통화가 아닌 ‘결제 및 회계 수단의 명목 통화’(가상의 통화)로서, 현행 북한 원화의 공식 환율은 미화 1 달러당 2.15원이므로 북한 돈 1원당 남한 돈은 약 530원 수준이 될 것임

기대 효과

- 직교역 체제의 구축과 남북 상호간의 교역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
- 청산결제의 도입은 직교역체제를 강화하고 필요 물품의 적기 공급과 판로 확보, 환전과 현금 직송금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등을 통해 상호 교역 의존도를 제고시킬 것임

1) 남북 양측은 지난 11월 11일에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해결 등 4개 부문의 남북경협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상대편 지역에서의 ‘안전하고 차별없는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각각의 합의서를 심층 분석하여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며, 그 첫 회로 청산결제제도를 심기로 한다.

- 또한 북측은 대금 결제 능력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남측도 남북 교역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이었던 남북한간의 적절한 대응 구매 상품 부재 문제와 대금 결제에 대한 교역업체의 불안감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임
- 동서독의 경우에도 청산통화 도입으로 1960~70년대 교역량이 평균 11.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음
- 남북교역 전용의 청산결제통화를 도입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화폐) 통합과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동서독과 같은 청산계정 대월제도를 도입할 경우,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신용 공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과거 서독은 대월제도를 동독에게 부여한 무이자 신용공여제도로 활용하였음
 - 그러나, 청산결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자유무역 확대 추세라는 세계적 환경 변화와 북한의 개방 지원에 역행한다는 단점이 있음

보완 과제

- 민족 내부거래의 국제적 인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는 '합의서'로 하되, 내용상으로는 국가간 '조약' 형태로 체결하여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그 동안 남북교역은 국제적인 공식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남북교역이 확대될 경우, 제3국이나 WTO 등으로부터 국제적 통상 규범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음
 - 남북간에 사실상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형태를 취할 필요 있음²⁾
 - 한편 민족 내부의 합의서는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해 법률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용면에서는 조약 수준의 협정 체결이 바람직
- 청산결제 방식 시행에 따르는 대금 결제 및 자본 이동에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와 이의 명문화가 요망됨

2) 지난 1995년 1월 우리 국회에서는 WTO 가입 인준시 남북한간 거래를 무관세 거래로 선언한 바 있으며, 과서 동서독간에도 국가간 계약 방식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청산계정의 범위와 대월 한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이의 세부화 및 명문화가 필요할 것임
 - 이는 교역 품목과 수량, 금액 등의 사전 합의가 전제되는 청산계정 운영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 현재 북한의 산업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수량과 제품의 질 등에서 상품 공급 의무가 사전 합의대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 지가 의문시되기 때문임
- 대월 한도제를 도입할 경우, 이의 신용 공여 재원 마련이 시급함
- 대월제도 및 신용한도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쌍방의 교역 규모와 남북협력기금 지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남북관계와 경협 확대 정도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과거 동서독은 대월한도를 동독의 對서독 반출 규모의 10%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대월제도가 신용차관 형태로 바뀌면서 25%로 확대된 바 있음
 - 대응 물품 부족과 북측의 외화난 상황에서 반출이 급증하여 남한의 일방적인 교역 흑자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보전할 재원 마련 방안 모색이 시급
- 단기적으로는 청산결제 방식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환결제 방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무역대금 결제 이외의 임가공료와 투자 송금 등은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결제를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태임
 - 그러나 북측이 과도한 신용공여(외상거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상품 반출은 환결제를 요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품 반입은 청산결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청산결제 방식 중심으로 운용하고, 점차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력 향상, 개혁·개방 진전 정도에 따라 환결제 방식을 확대해나가기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특히, 청산결제는 인도적 차원 및 SOC 중심의 경제 지원에 우선 시행하며, 일반의 환결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홍순직 연구위원 sjhong@hri.co.kr ☎ 3669-4082)